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(법률 제18646호, 시행 2022. 6 .29.)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(안 제21조의2, 안 제27조의2)

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
나.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(안 제28조, 안 별표2)

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문 조항번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입법공백 영역인 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(2022. 4. 4. ~ 4. 14.) 결과, 이견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4. 7. ~ 5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’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3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
②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, 가입자 자격 취득·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, 가입자 자격 취득·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
3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, 피보험

자격 취득·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

제2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
2.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
3.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
4.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

제28조 중 “법 제21조제1항”을 “법 제2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22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1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22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1조제1항제2호”를 각각 “법 제22조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1조제1항제3호”를 각각 “법 제22조제1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1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22조제1항제4

호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 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제5호	40
---	--------------	----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</u> <u>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’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</u> <u>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</u> <u>3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</u> <u>②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, 가입자 자격 취득·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</u> <u>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, 가입자 자격 취득·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</u> <u>3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</u>

<신 설>

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,
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등 가
입현황에 관한 자료

제2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법
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
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
관이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
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
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
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
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
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
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
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
한 사무

2.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
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
의 수리에 관한 사무

3.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
에 관한 사무

4.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
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

제2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21조제1항</u>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<u>관한 사무</u> 제2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22조제1항</u>----- -----.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732